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의거 2015년 5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 주식회사 심텍(가칭,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전회사는 주식회사 심텍홀딩스(가칭, "분할신설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0.4601398주의 비율로 병합할 예정인바,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당사의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상 주권 : (주)심텍 기명식 보통주
2. 구주권 제출기간 : 2015년 05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3.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 2015년 06월 29일 ~ 2015년 08월06일(예정)
4. 신주권교부 예정일 : 2015년 08월 06일
5.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예정 장소
 - 1) 명부주주 : 한국예탁결제원
 - 2) 실질주주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식과 한국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은 주식병합 기준일에 실질주주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구주권 제출 등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기타사항
 - 1)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2) 본 일정은 관련 법규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년 05월 29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
주식회사 심텍
대표이사 전세호 전명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